

● 제28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2019 2. 2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345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혜련 의원(발의의원 21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1. 28.
- 다. 회부일 : 2019. 1. 3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·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.
- 서울시 거주 생존애국지사는 현재 10명으로서 이들의 평균연령이 95세에 이르고, 2013년 보훈명예 수당(월10만원)을 최초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,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 및 지원이 낮으므로 확대가 매우 시급함.
- 금년은 3·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생존애국지사의

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하여 연2회(3·1절, 광복절)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을 명문화하고, 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까지 확대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진작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.(안 제3조제1호)
-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가 1명에게 위문금(10만원) 지급함(안제3조제3호)
- 독립유공자 사망에 따라 직계후손이 위문금 대상 선순위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급 시기 및 금액을 구체화 함(안제3조제3호단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 거주 생존애국지사의 평균연령이 95세에 이르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가 시급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생존애국지사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(현재 월10만원)으로 인상 지원하며,
- 시장 방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직계후손 중 선순위자 1명에 한하여 연2회(명절 및 관련 기념일)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시기를 3.1절과 광복절로 명시하고 위문금 지급 대상을 조례상 명문화하며, 직계후손이 선순위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촌의 형제·자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생존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상향 (안 제3조제1호)

- 서울시는 2013년부터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(월 10만원)을 지급하고, 3.1절·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(각 10만원)을 지급하고 있음.
-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생존애국지사(10명)의 평균연령이 95세에 이르며 '13년 이후 수당 지급액이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,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기념일 위문금 지원대상자(본인 및 선순위자, '18. 8월 기준)

계	본인 (애국지사)	배우자	자녀	자녀의 배우자	손자녀	기타
1,860	10	108	862	28	839	13

나. 위문금 지급대상 직계후손 확대(안 제3조제3호)

-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생존애국지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근거를 3.1절과 광복기념일로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고 위문금을 1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음.
- 또한, 위문금 지급대상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경우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직계후손 중에서 선순위자가 나온 경우에는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위문금 지급 자격을 부여하였음.

※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
3. 손자녀. 다만,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.
4.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

-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, 독립유공자 (손)자녀 대다수가 저소득계층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

실정임.

※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보조금 지원현황

구 분	인원	자녀	손자녀
월 468천원 지급자	513명	63명	450명
월 335천원 지급자	2,660명	321명	2,339명

- 검토하건데,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은 선순위자라는 구분없이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할 당위성 있다고 할 것이며, 집행부의 실태조사와 같이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 경제적 지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3 종합 의견

- 본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,
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정안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.
- 위문금 지급대상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직계후손 중 선순위자가 나온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위문금 지급자

격을 부여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은 선순위자라는 구분없이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할 당위성 있다고 할 것이며, 집행부의 실태조사와 같이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 경제적 지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○따라서 본 조례는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참 고 1

보훈대상자 현황

(단위 : 가구 / 2018.12.31.현재)

구 분		전 국	서울시
총 계		835,536	158,598
합 계		394,010	73,243
독립 및 국가유공자	소 계	386,774	72,011
	순국선열 및 애국지사	7,577	2,062
	전몰·순직군경 전·공상군경	249,958	42,078
	무공·보국수훈자	113,613	25,023
	재일학도의용군인	289	125
	4.19혁명사망·부상·공로자	825	347
	순직·공상공무원	14,497	2,364
	특별공로순직자유족	15	12
보훈 보상 대상 등	소 계	7,236	1,232
	지원대상자	2,821	450
	보훈보상대상자	4,415	782
6.18자유상이자		366	95
5.18민주사망·부상·기타희생자		4,396	617
특수임무사망·부상·공로자		3,715	642
고엽제후유의증환자		51,160	7,788
참 전 유 공 자		299,182	60,887
제대군인(5년이상)		82,707	15,326